



Choi, Kim & Park, LLP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ONSULTANTS

An Independently Owned Member
McGLADREY ALLIANCE



FATCA and FBAR for Multinational Entities and their Employees (주재원들의 한국 및 미국의 소득과 자산신고)

Presented by Hoon Kim, CPA

For 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 of S. California

July 28, 2016

CASES (사례)

- CASE 1) 주재원 A는 2012년말 미국에 5년간 근무하다 귀국했는데 2014년 3월 승진해서 다시 미국에 왔다. 한국에 전세금을 받아놓은 5억 구좌 그리고 2억의 증권구좌가 있는데 신고를 한적이 없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미신고 자산이 불안하다.
- CASE 2) 본사 대주주 B가 미주법인을 통하여 5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미국에 실제 근무한적은 없지만 미국내 급여만 세금보고를 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해도 그 동안 미보고 자산과 소득이 막대하여 망설이고 있다. 세금을 안내고 영주권만 반납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다.
- CASE 3) 법인장 C는 5년 임기로 2014년부터 미국에 근무중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귀국하려고 한다. 그동안 부모로 받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이 있었고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10억의 차명구좌를 운영하고 있다. 어차피 본인은 돌아갈것이라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FATCA의 실행으로 본인 구좌가 미국에 통보 되더라도 이미 귀국해 버렸는데 별일 없을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법상 미국인 (US person)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 당해년도에 최소한 31일이상 거주하고
 - $100\% \text{ 당해년도} + 1/3 \text{ 직전년도} + 1/6 \text{ 직직전년도} \geq 183$
 - 위에 해당되면 당해년도 미국 최초체류일부터 적용
 - 예외: Tax home/Closer connection exception: 단, 당해년도 중 미국 거주일자가 183일 미만이어야 함. (form 8840)
- 조세협약상 예외규정 (Tie-breaker rule)
 - 양쪽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세법에서 정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 선택 (form 8833)
 - 파견자와 국외거주 미국영주권에 해당
 - 영주권자는 이민법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시민권 취득불가
-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보고의무

주재원의 한국세법상 의무

- 한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 제 1조2/동법 시행령 2조 및 4조
 - 거주기간, 직업, 국내 거주 가족, 자산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
 - 해외 영주권을 받거나 또는 직업상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비거주자의 의무
 -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보고의무 없음
- 해외파견된 대부분의 내국법인 소속 주재원은 세법상 “미국인”
 - 미국 소득세 보고시 전세계 소득 합산
 - 한국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액은 해외납세액 공제 신청

주재원의 부임과 귀임년도 세무보고

➤ 부임년도

- 세법상 외국인과 미국인의 이중신분 (Dual-status Taxpayer)
- Substantial Presence Test(SPT)에 해당되면 부임일부터 소급됨
- 선택(election)에 의하여 부임년도 1월1일부터 미국납세자가 될수 있음:
조건: 기혼, Spouse도 년도말에 US taxpayer일것, MFJ
- First-year choice (해당년도 31일이상/다음년도에 SPT부합)
- Form 1040 (1040NR statement)

➤ 귀임년도

- 세법상 외국인과 미국인의 이중신분 (Dual-status Taxpayer)
- Statement to establish the residency termination date
 - 귀임일/여권번호/close connection/사유/증빙서류 등
- Form 1040NR (1040 statement)

FATCA (해외 금융자산 신고법)

➤ 2010년 3월 제정 (3가지 규정)

- \$50,000 이상 해외금융자산 자진보고 (2011년부터 Form 8938)
- 해외 금융기관에서 \$50,000 이상 금융계좌 자동정보제공 (2014년 7월1일 시행)
- 해외에 지급하는 이자, 배당, 로얄티 등이 있을 때 수령인의 미국내 등록 및 정보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시행)

➤ 2014년 10월 한국정부 다자간 정보협정(MCAA) 서명

- FATCA 시행에 앞서 OECD는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을 제정
- 한국정부는 MCAA에 서명함으로써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

➤ 2015년 6월 FATCA 협정체결

- 미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양국거주자의 역외금융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교류

FATCA에 의한 보고기준및 시점

| 구분 | 기준 | 실사기한 | 보고잔액 | 최초제출 시점 |
|----|---------------------------|-----------|-----------------------|----------|
| 신규 | 7/1/2014 이후개설 5만불초과 | 계좌개설시 | 매년말 잔액 (2014/2015) | Sep 2016 |
| 기존 | 6/30/14 1백만불 초과 | 6/30/2015 | 매년말 잔액 (2014/2015) | Sep 2016 |
| | 6/30/14 5만-1백만불 | 6/30/2016 | 매년말 잔액 (2014/2015) | Sep 2017 |

FATCA 납세자별 보고기준

| 거주국 | 구분 | 년말잔고 (US\$) | 년중 최고잔고 (US\$) |
|------|------------------------|-------------|----------------|
| 미국거주 | Single/MFS | 50,000 | 75,000 |
| | Married Filing Jointly | 100,000 | 150,000 |
| 한국거주 | Single/MFS | 200,000 | 300,000 |
| | Married Filing Jointly | 400,000 | 600,000 |

FATCA 미국 납세자 식별 및 구분

- 미국 관련 징후 (US Indicia)
 - 계정주가 미국거주자나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 계정주의 출생지가 미국인 경우
 - 미국 거주주소 또는 미국 통신주소를 쓰는 경우
 - 미국에 있는 계정으로 자금이체를 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위임권이나 서명권을 준 경우
- 잔액 \$50,000 이상 \$1,000,000 미만 : 컴퓨터 검색
- 잔액 \$1,000,000 이상: 컴퓨터 검색 및 관련서류 수동검색
- 지방은행: 소재국에서만 영업하고 소재국 거주자가 98% 이상 일 경우 IRS에 별도로 등록하고 FATCA의무를 지지 않는다

FBAR (해외은행계좌신고)

- 연중 한번이라도 합계 \$10,000이상의 해외은행계좌 보유자
 - 미시민권자, 영주권자(Tie-breaker와 상관없음)
 - 주재파견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
- E-file mandatory
- 50%이상 소유 외국 자회사 계좌도 보고
- 미보고 벌과금 (2015년3월 경감책 발표)
 -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때: 0
 - 고의성이 없을 때: 매년 \$10,000 (계좌수에 상관없음)
 - 고의성이 있을 때: 조사대상년도중 가장큰 연중최고잔액의 50% (각년도별로 비례배분)
- 제척기간: 6년

FBAR 미신고자의 해결책 선택사항

➤ 새 구제절차: New Streamlined Procedures (2014년 7월 1일 시행)

- 기존 매우 제한적인 streamlined procedure의 주요 전제조건 대부분을 삭제하여 사실상 고의성이 없는 FBAR 보고미이행 납세자 전부가 해당됨
- FBAR 보고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다(non-willful)를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해야 함
- IRS는 그동안 고의성이 있는 FBAR non-filer의 구제절차인 OVDP만을 인정하였으나, 비고의성의 FBAR non-filer의 구제절차를 처음으로 공표하여 대대적으로 불이행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 미국외 거주자의 경우 penalty 면제
- 미국내 거주자의 경우 6년간 최고 금융자산 (연말)잔고의 5% penalty
- IRS는 동 절차에 의한 자진신고시 비고의 불이행(Non-willful noncompliance)을 일일이 검토하고 통상의 조사방식으로 확인할 것임을 시사.
- 비고의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문서화 필요

FBAR 미신고자의 해결책 선택사항

➤ New Streamlined Procedures (continued):

- 미국거주 기준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지난 3년간 (2011/2012/2013) 한해라도 미국외에 최소 330일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미국외 거주로 인정됨
 - 미국 장기체류자의 경우 가중합산한 미국 거주일이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 미국 거주자로 인정됨
- 미국외 거주자의 5% penalty 계산시 지난 6년간(2010-2015) 연 중 최고액이 아닌 연말잔액 기준 최고액으로 계산
- 최근 3년(2013-2015) 세금보고와 6년 FBAR 보고를 자체인증과 같이 접수하는데 미국거주자는 5% 벌금을 계산해서 선납해야 함
- 동 구제절차에 기한은 없으나 언제라도 폐지될 수 있음
- IRS가 고의성이 없는 FBAR 미행자에 대한 마지막 선물일 확률이 높음

FBAR 미신고자의 해결책 선택사항

➤ OVDP (자진신고프로그램)

- 과거 8년간 FBAR/세금보고 소급보고
- 보고기간중 은행계좌 최고잔액의 27.5% 벌금
- 미납세금의 20% 불성실 가산세 와 이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보장되지 않음
 - 이례적으로 OVDP 신청자 형사기소 (2013년3월)
- Opt-out : OVDP을 종료하기전에 프로그램 탈퇴

➤ Quiet Disclosure

- 미신고한 과거년도 FBAR와 (수정)세금보고를 조용히 신고
- GAO (미국감사원)이 IRS에 철저한 단속지시 (2013년 5월)
- 혹은 과거는 정리하지 않고 2015년 세금보고부터 신고
 - IRS notice를 받을 확률이 높으며 Interview를 하게 됨
 - IRS에서 과거 불이행 사실을 먼저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면 무관용 원칙적용

FBAR 미신고자의 해결책 선택사항

- Qualified Quiet Disclosure (or Explained Disclosure)
 - 제척기간내인 과거 6년간 FBAR 소급신고
 - 과거 3년간 세금신고 혹은 수정신고 (미신고 해외금융소득이 \$5,000을 넘으면 제척기간이 6년으로 연장됨)
 - 신고와 동시에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s)를 제출하여 벌금 면제를 요청
 - 법률적 무지 (Ignorance of the law) 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법률전문가의 자문 필수)
 - 납세자의 교육정도, 직업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음
 - CPA는 CPA-client privilege가 없음
 - IRS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고의적이라는) 입증책임은 IRS에 있음
 - 아직 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케이스가 없음

FBAR 미신고자의 해결책 선택사항

➤ 세법상 거주자 선택(Tie-breaker Election)

- 한미조세협약 제3조
- 미국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고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미국소득포함 보고
- 매년 세금보고시 Form 8833 첨부
- 미국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한국 납세자와 미국 납세자로 동시에 포함될 경우 인적·경제적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 등을 판단기준으로 가까운 나라의 납세자임을 주장
- 한국 납세자로 판단되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되 한국소득은 보고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자산 신고의무는 남아있다.
- 미국이민법상으로 Election과 동시에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 2008년 6월 기존법률 개정
- 미국시민권자, 장기거주 영주권자 (과거 15년 중 8년이상 거주)
- 기준일: 국적포기일 또는 국적포기 간주일
- 고소득자 및 대 자산가가 해당
 - 기준일 이전 5년간 평균 소득세납부액이 \$160,000 이상 (2015 기준)
 - 기준일 현재 순자산 \$2,000,000 초과: 전세계 자산의 시장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
- 기준일에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기본 공제 (2015 \$690,000)후 단기 최고 39.6%, 장기 20%
- 국적을 포기해도 과거 FBAR 불이행과 미납세금에 대한 의무는 남아 있음 (최장 6년)

US tax for foreigners (상속증여)

- Estate and Gift taxation
 - US citizen and foreign citizens domiciled in US – differ from tax purpose resident
 - Domicile: resides and no definite present intention of later removing therefrom.
 - Facts and circumstance tests
 - No current estate treaty between US and Korea
- NRNC (Non-residents, Non US citizens)
 - US situs assets only (excludes intangible assets) including cash, car, jewelry, artworks etc
 - Unlimited exclusions for gifts for education and medical exp
 - Gift to spouse: \$148,000/year Others \$14,000/year (2016)
 - Estate tax exemption: \$60,000

NFFES에 대한 FATCA규정

- FDAP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의 NFFEs수령인에 대한 규정
 - 이자, 배당금, 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
 - 30% 원천징수 의무
 - 조세협약상 경감세율적용
 - ✓ 이자: 12%
 - ✓ 배당금: 10%
 - ✓ 로얄티: 15% (영화/음악/방송관련: 10%)
 - 경감세율 적용되는 수령인에게 새로운 보고양식 W-8BEN-E 징구
 - 미징구 혹은 불완전한 서류징구시 30%+Back tax 벌금
 - 시행일: 2015년1월1일

Form W-8BEN-E

➤ Form W-8BEN-E (Certificate of Status of Beneficial Owner of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Entities))

- 9 pages (FFI & NFFEs 사용)
- 제출일이 속한 년도말부터 유효기간 3년 예: 9/30/2014 서명은 12/31/2017까지 유효.
- 주요정보 변경시 30일내로 재징구
- 수령인의 미국납세자번호(US EIN or TIN number) 반드시 받아야 유효.
- NFFEs의 상당한(10%이상) 소유권이 미국납세자에 있는 경우 상세한 정보제공
- 위반시 30% 원천징수(12%원천징수 한 경우 18%차액)+ 벌금과 이자.

Treaty Tie-Breakers

- **Are you a U.S. tax resident?**
 - Lawful permanent resident (i.e. "green card")
 - Substantial presence test (a number of days test, i.e. ≥ 183 days)
 - "Closer connection" exception (i.e. closer connection to Korea)
- **U.S. tax resident → subject to worldwide taxation**
- **If you are a U.S. tax resident and a tax resident under Korean tax laws, then you may consider the treaty tie-breaker exception (to worldwide tax).**
 - U.S.-Korea double tax treaty (the "Treaty") established a single residence (i.e. Korea)
 - Thus, not taxed on worldwide income, only U.S. source income
- **Claiming tie-breaker provision requires filing Form 8833**
- **Establishing non-U.S. tax residency under the tie-breaker provision**
 - Legal analysis,; highly factual; supported by case law, OECD commentary, international cases

Treaty Tie-Breakers (cont.)

- **Tie-breaker factors**
 - Permanent Home (i.e. own, lease, personal property);
 - Center of Vital Interest
 - Personal Relationships
 - Business
 - Political vote
 - Property owned in both U.S. and Korea (comparative)
 - Stocks, bonds, checking accounts
 - Insurance (i.e. life, health, vehicle)
 - Habitual Abode
 - Personal memberships (fitness center, golf club)
 - Time spent in Korea and U.S. (comparative)
 - Citizenship
- **Establish residency through this legal analysis**
 - CKP role as advocate for taxpayer; provide legal opinion letter

Closer Connection Exception

- **Closer Connection factors**
 - Similar to tie-breaker factors; very factual; legal analysis
 - Common factors
 - Permanent home
 - Location of family
 - Location of personal belongings
 - Politic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 Location of business activities
 - Must file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emption Statement for Aliens)

Compliance and Other Issues for Tie-Breaker Aliens

- **File an income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 Form 1040NR**
- **International Reporting Forms**
 - Need to evaluate what other forms a tie-breaker alien must file
 - Failure to file could result in severe civil penalties
 - Form 8938 (Foreign Financial Assets Reporting Form)
 - FinCen Form 114
 - Subject of this seminar; hot issue item per IRS agenda and FATCA
 - Form 5471 (owning foreign stock, resident alien a office/director)
 - Other relevant forms:
 - Form 8865 (partner in foreign partnership)
 - Form 3520 (foreign trusts)
 - Form 926 (non-recognition transfers of property)
 - Form 8621 (PFIC)
- **Immigration law issues – tie breaker election risks losing green card**

Contact Us



Los Angeles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2240
Los Angeles, CA 90010
T: (213) 480-9100
F: (213) 480-9107

Houston Office

2950 North Loop West, Suite 500
Houston, TX 77092
T: (713) 730-7755
F: (713) 730-7501

San Diego Office

7675 Dagget St., Suite 360
San Diego, CA 92111
T: (858) 560-5200
F: (858) 560-5697

Irvine Office

2010 Main St., Suite 520
Irvine, CA 92614
T: (949) 757-0900
F: (949) 757-0668

Montgomery Office

6743 Taylor Circle
Montgomery, AL 36117
T: (334) 356-5550
F: (334) 356-8880

Fort Lee Office

400 Kelby St. 11th Fl. Suite H
Fort Lee, NJ 07024
T: (201) 585-7200
F: (201) 585-7203

San Mateo Office

1810 Gateway Drive, Suite 115
San Mateo, CA 94404
T: (650) 937-1040
F: (650) 937-0002

LaGrange Office

1510 Lafayette Pkwy #C1
LaGrange, GA 30240
T: (706) 416-2655
F: (706) 416-2640